

# 이연 및 공제의 시너지 효과: 외상 경내 재투자의 새로운 세수우대혜택 정책 해설

2025.07

Issue 6

## 개요

재정부, 세무총국, 상무부는 2025년 6월 27일 《경외 투자자의 이익배당금 직접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책에 관한 공고》<sup>1</sup> (재정부, 세무총국, 상무부 공고[2025]2호, 이하 “2호 공고” 또는 “신정책”이라 함)를 공동으로 발표하였고, 경외 투자자에게 중국 경내 거주자기업의 이익배당금을 통한 경내 재투자에 대한 또 하나의 세수우대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2호 공고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경내 직접투자에 적용됩니다. PwC는 관련 경외 투자자가 발표 예정인 2호 공고의 징수관리 보충규정에 관심을 기울임과 동시에 투자계획, 투자수익률을 종합하여 세액 이연 및 공제의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세수우대혜택을 적용하는 것과 더불어 혜택 적용의 사후 추적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며 관련 변화 발생 시 세금을 적시에 납부하여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방지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상세 내용

### 一、재투자 세액공제와 재투자 과세이연의 연관성

2호 공고 발표 전, 재세[2018]102호 문건<sup>2</sup> (이하 “102호 문건”이라 함)은 다년간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102호 문건에 따르면, 경외 투자자는 경내 거주자기업의 이익배당금을 사용하여 경내에 재투자하는 경우 원천소득세를 이연 납부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실제 철수하는 경우, 이연 과세액을 신고 및 보충 납부해야 합니다.

2호 공고는 102호 문건의 과세이연에 기초하여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제공했습니다. **경외 투자자는 중국 경내 거주자기업 이익배당금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경내 직접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투자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할 시 투자 금액의 10%를 기준으로(조약상 배당원천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조약상의 세율을 기준으로 함) 공제 한도액을 획득하여, 당기 경외**

투자자가 이익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 이자, 특허권사용료 등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 후 남은 한도액은 이후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투자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공제 한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투자 세액공제의 요건은 과세이연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그 요구수준이 보다 높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Part 2 참조). 즉, 재투자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경외 투자자일지라도 재투자 세액공제 정책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외 투자자가 재투자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면, 2호 공고에서는 해당 투자자가 재투자 과세이연의 요건도 충족함을 암묵적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신정책 시행 후 경외 투자자가 경내 기업 이익배당금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경내 재투자를 할 경우 두 가지 혜택 정책을 같이 적용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원천소득세를 이연 납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응하는 공제액을 획득하여 중국 원천소득세 세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상투자자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중국 투자가 더욱 장려될 수 있습니다.

## 二、재투자 세액공제 한도액 획득 방법

경외 투자자가 경내 기업 이익배당금을 통해 재투자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다음 5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익의 원천:** 경외 투자자가 분배받은 이익은 중국 경내 거주자기업이 투자자에게 **실제로 분배한 유보이익**에서 발생한 배당금, 분배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에 속해야 합니다. 이는 102호 문건의 규정과 기본적으로 일치합니다. 2018년 1분기 세무총국 세수 정책 해설 기자회견 전문 기록에서 과세이연 정책의 이익 원천 규정에 대한 해설을 참고하여 유사한 기준을 채택하면, 실제 분배한 유보이익은 이전연도 유보되어 분배되지 않은 수익을 포함해야 하며, 기업 청산 소득 중 배당금, 분배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분배 예정 이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투자 방식:** 경외 투자자가 이익배당금으로 진행한 경내 **직접투자**란 다음을 말합니다:

- 중국 경내 거주자기업의 실납자본 또는 자본잉여금의 신규 증가 또는 전입
- 중국 경내에서 투자하여 거주자기업 신설
- 비특관자로부터 중국 경내 거주자기업의 지분 인수

“중국 경내 거주자기업”이란 중국 경내에서 설립한 거주자기업을 말하며, 경외에서 설립했으나 중국 세무상 거주자 신분을 보유한 중국 거주자기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호 공고에서는 대부분 경외 투자자의 중국 투자에 대한 기존의 방식을 포괄했으며, 이와 더불어 부적절한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투자에 상장회사 지분(조건에 부합하는 전략 투자 제외)에 대한 신규 증가, 전환, 인수는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무상 일부 경외 투자자는 경외에서 다층 구조를 구축하고, 경외 투자자가 이익을 모회사에 재분배한 후 모회사가 경내로 재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경내 기업의 이익이 최종적으로 경내 재투자자에게 사용되었으나, “직접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혜택 정책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자금 흐름:** 경외 투자자가 분배받은 이익이 실제로 직접투자에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2호 공고와 102호 문건은 모두 재투자자의 자금 흐름 경로에 대한 요건을 설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내 직접투자에 사용되는 경외 투자자의 이익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관련 대금은 이익배당 기업의 계좌에서 피투자기업 또는 지분양도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며, 직접투자 전 경내외 기타 계좌로 송금되어서는 안 됩니다.
- 경외 투자자가 경내 직접투자에 사용하는 이익이 실물, 유가증권 등 비현금 형식으로 지급된 경우, 관련 자산의 소유권이 이익배당 기업에서 피투자기업 또는 지분양도자로 직접적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직접투자 전 기타 기업, 개인이 대신 보유하거나 임시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4) **투자 산업:**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외자들이 장려 유형 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호 공고에서는 경외 투자자의 재투자 영역에 대해서 제한했으며, 경외 투자자의 경내 재투자 기한 동안 피투자기업이 운영하는 산업은 **《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에서 열거한 전국 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유의: 《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에서의 지역 투자 목록 제외)에 속해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이는 102호 문건의 규정과 다른데, 102호 문건에서는 비금지 외상투자 항목 및 영역에 속하면 된다는 것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투자 세액공제의 투자 영역 요건이 과세이연의 요건보다 더 엄격합니다. 또한, 피투자기업이 장려 유형 목록의 산업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장려 유형 목록이 경외 투자자의 재투자 이후 변경된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한층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투자 기간:** 102 호 문건은 과세이연이므로 재투자 보유 기간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은 반면, 재투자 세액공제 정책은 경외 투자자가 재투자를 하는 경우, **최소 5 년(60 개월) 이상 연속으로 보유**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5 년 지분 보유에 대해 영구적 세액공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상들이 장기적 안정적 투자를 진행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 三、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경외 투자자의 경내 재투자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당기 과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1) **공제 가능 세액:** 경외 투자자가 공제할 수 있는 세액이란, 경외 투자자가 **이익배당 기업에서 이익배당 재투자일로부터 취득한 기업소득세법 제 3 조에서 규정한(즉 법정 원천징수 항목) 배당, 이자, 특허권사용료 등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를 말합니다. 공제 가능 항목은 성격, 원천, 기간 3 가지 조건이 있으며, 서비스료,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 등 법정 원천징수 항목에 속하지 않는 항목을 포함하지 않고 기타 경내 기업 지급 소득을 포함하지 않으며, 재투자일 이전에 취득한 소득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외 투자자가 이익배당 기업을 양도하고 취득한 지분 양도소득 또는 청산 과정에서 양도소득으로 간주되는 부분은 공제 가능 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외 주주가 이익배당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재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상적으로 송금하면, 송금 부분에 대해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가 재투자에서 발생한 공제 한도액을 즉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즉, 해당 배당금이 재투자일 이후에 실제로 지급될 경우 재투자일로부터 취득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경외 투자자는 2 가지 자금을 구분해야 함에 유의해야 하며, 추가 징수규정과 실무상 절차 및 문서 구비 요건에 주목해야 합니다.
- 2) **공제액 계산 및 이월:** 경외 투자자는 조건에 부합하는 투자 금액의 10% 만큼 당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미처 공제하지 못한 잔여분은 이후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이익배당에서 발생한 배당원천세를 활용하여 경내 투자를 장려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수립했으므로, 2 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중국과 외국 정부 간 체결한 조세조약상 배당, 분배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의 적용 세율이 10%보다 낮은 경우, 조약상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배당금에 대해 조약상의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수익적소유자 등 조건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경외 투자자의 조약상 우대혜택의 실제 적용가능여부를 고려해야 할지, 아니면 조약상의 낮은 세율로 일률적으로 계산해야 할지 여부는 세무당국이 추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 비율과 향후 투자 회수 시 보충 납부하는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외 투자자에게 혜택 적용의 과소 또는 과다 등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四、향후 투자 회수 시, 세금 보충 납부 및 공제 한도액 상환 필요 여부

경외 투자자가 세액공제 정책을 적용한 후 투자를 회수할 시, 세금을 보충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2 호 문건은 과세이연 정책에서 “투자 회수”가 지분 양도, 환매, 청산 등 방식을 통해 실제로 우대혜택 정책을 적용받은 직접 투자를 회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2 호 공고의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참고할 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호 공고의 규정에 따르면, 투자 회수에 대한 세무처리는 다음 2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1) **5 년(60 개월) 이상 투자 후 직접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문건에서는 “그 회수 투자에 대응하는 경내 거주자기업 이익배당에 대해서는 투자 회수 후 7 일 이내에 이익배당 기업 소재지 세무기관에 이연받았던 세금을 신고 및 보충 납부해야 하며, 재투자 세액공제 이월 잔액은 과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경외 투자자가 공제액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고 공제 비율이 보충 납부 세금의 적용 세율과 일치한다면 신고 및 보충 납부하는 이연 세금은 0 입니다. 이는 재투자 후 만 5 년이 되면 기존에 이연되었던 이익배당에 대한 원천소득세를 결국 면제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 2) **5 년(60 개월) 미만 투자 시 직접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문건에서는 “그 회수 투자에 대응하는 경내 거주자기업 이익배당에 대해서는 재투자 공제의 혜택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경외 투자자가 이연 세금을 보충 납부할 뿐만 아니라, 비율에 따라 경외 투자자가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액을 줄여야 하며, 경외 투자자가 이미 사용한 세액공제 한도액이 조정 후 공제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경외 투자자는 투자 회수 후 7 일 이내에 초과분 세금을 보충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투자 기간이 5 년 미만인 경우 세액공제의 최초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연 세금을 보충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제 한도액도 상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도액이 사용된 경우, 세금 보충 납부의 방식으로 한도액을 상환하고 연체료를 추징해야 합니다. 연체료의 연이자율이 높으므로 경외 투자자는 2 호 공고에서의 재투자 세액공제 정책을 적용할 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102 호 문건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경외 투자자가 회수한 직접투자에 세액공제 정책을 이미 적용한 부분과 아직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정책을 이미 적용한 투자를 먼저 처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피투자기업의 지분 재조정이 특수성 재조정 조건에 부합하고 특수성 재조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게 된 경우, 경외 투자자는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정책을 계속 적용할 수 있으며 세금을 보충 납부하거나 공제액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2 호 공고에서는 투자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전액에 대한 세금 보충 납부 및 공제가 아니라 회수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보충 납부하고 세액공제 한도액을 공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또한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리 방식입니다.

**사례**

경외 A 사는 화학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에 종사합니다. 2016 년 경외 A 사는 경내에 외상독자기업 B 를 설립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시장의 빠른 성장에 의해 2023 년 A 사는 경내에서 외상독자기업 C 를 설립했고 화학 보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자본금 800 만 RMB 를 투자했습니다. 2026 년 B 사의 이익 상태가 양호하여, 회사는 유보이익으로 경외 A 사에 배당금 1000 만 RMB 를 분배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해당 이익을 C 사의 증자에 사용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증자 후 C 사 실납자본은 1800 만 RMB 입니다. 경외 A 사의 소재 국가와 중국 간 조세조약에는 배당소득 우대세율이 없습니다.

만약 1) C 사의 사업이 전국 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에 부합하고, 2) 경외 A 사가 취득한 이익배당의 자금이 C 사 자본금 계정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2 호 공고의 요건에 부합하며, 3) 경외 A 사가 C 사를 5 년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하면, 경외 A 사는:

-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B 사는 2026 년 분배되는 배당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원천소득세(즉, 1000 만 x10% =100 만)를 일시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울러**,
- 세액공제 한도액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경외 A 사는 C 사 증자액의 10%에 해당되는 세액공제액(즉, 1000 만 x10% =100 만)을 획득하여 B 사로부터 취득한 법정 원천징수 항목에 대한 원천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투자 회수 후 보충 납부해야 할 이연 원천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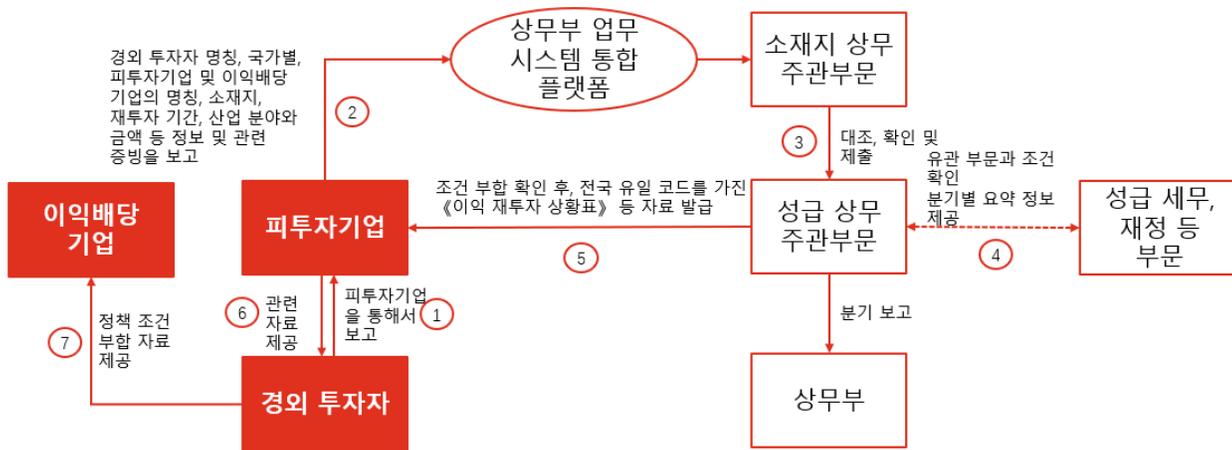
PwC 는 보유 기간, 공제 한도액 사용 상황에 따라 다음 4 가지 경우의 세부담을 분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세무 영향
Case 1: 5 년 이후 재투자 전부 회수, 회수 전 공제액 미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 년부터 2032 년까지 B 사는 경외 A 사에 이익을 분배하지 않거나 이자, 특허권사용료 등 원천징수 항목의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음</li> <li>• 2032 년, 경외 A 사는 C 사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으며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하지 않았음(이하 동일)</li> </ul>	<p>경외 A 사가 재투자 프로젝트 C 사의 지분을 회수했으므로 기업소득세 100 만을 보충 납부해야 하지만, 재투자 시 획득한 세액공제액 100 만을 사용하여 보충납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경외 A 사의 2026 년 이익배당금에 대해 실제로 납부하는 기업소득세액은 0 임.</p>
Case 2: 5 년 이후 재투자 전부 회수, 회수 전 공제액 사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 년 B 사가 경외 A 사에 특허권사용료 300 만 RMB 지급</li> <li>• 2032 년 경외 A 사가 C 사 전체 지분을 양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 년, B 사는 경외 A 사에 대해 원천소득세 30 만(즉 300 만 x10%=30 만)을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세액공제액 30 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공제액 70 만을 이후연도로 계속 이월할 수 있음. 이에 따라, 2030 년 B 사가 실제로 원천징수할 세액은 0 임.</li> <li>• 2032 년, 경외 A 사가 재투자 프로젝트 C 사의 지분을 회수했으므로, 경외 A 사는 기업소득세 100 만을 보충 납부해야 하지만, 잔여 세액공제액 70 만을 사용하여 공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경외 A 사가 2032 년 실제로 보충 납부할 기업소득세액은 30 만임.</li> </ul>
Case 3: 5 년 경과 전에 재투자 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변화로 인해 경외 A 사는 사업 전략을 조정하여 2028 년 C 사의</li> </ul>	<p>경외 A 사가 재투자 프로젝트 C 사의 지분을 보유한 지 5 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경외 A 사는 기업소득세 100 만을 보충</p>

<b>회수, 회수 전 공제액 미사용</b>	전체 지분을 양도함 • 2026년부터 2028년까지 B 사는 경외 A 사에 이익을 분배하거나 이자, 특허권사용료 등 원천징수 항목의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음	납부해야 하며 공제한도액 100 만을 반납해야 함. 2028 년, 경외 A 사는 기업소득세 100 만을 보충 납부해야 함.
<b>Case 4: 5년 경과 전에 재투자 전부 회수, 회수 전 공제액 사용됨</b>	• 시장 변화로 인해 경외 A 사는 사업 전략을 조정하여 2028년 C 사의 전체 지분을 양도함 • 2027년, B 사는 경외 A 사에 특허권사용료 300 만 RMB 지급	• 2027년, B 사는 경외 A 사에 대해 원천소득세 30 만(즉 300 만 x10%=30 만)을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공제액 30 만을 사용하여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0 임. 또한, 잔여 공제액 70 만을 이후연도로 계속 이월할 수 있음. • 경외 A 사가 재투자 프로젝트 C 사의 지분을 보유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경외 A 사는 기업소득세 100 만을 보충 납부해야 하며 공제액 100 만을 반납해야 함. 다만, 2028년 경외 A 사의 잔여 공제액 70 만이 상환 한도액 100 만보다 적으므로 해당 세금(즉 30 만) 및 연체료를 보충 납부해야 함. 즉, 2028년 경외 A 사는 기업소득세 130 만(즉 100 만+30 만=130 만) 및 30 만 세금을 대한 연체료를 보충 납부해야 함.

### 五、세액공제 적용 방법

경내 재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조건 확인 절차가 적용되며 상무, 재정, 세무 3 개의 행정기관과 관련됩니다. 세액공제의 적용 절차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그림과 같이, 전체 절차는 경외 투자자, 피투자기업, 이익배당기업 간 협업이 필요합니다:

#### 1) 경외 투자자

- 투자 시: 피투자기업이 상무부 업무 시스템 통합 플랫폼(외상투자 종합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소재지 상무 주관부문에 경외 투자자의 명칭, 국가별, 피투자기업 및 이익배당기업의 명칭 및 소재지, 재투자 기간, 산업 분야와 금액 등 정보 및 관련 증빙을 보고합니다.
- 투자 시: 세수관리규정에 따라 이익배당기업에 정책 조건 부합 자료를 제공합니다.
- 투자 회수 시: 피투자기업이 상무부 업무 시스템 통합 플랫폼(외상투자 종합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소재지 상무 주관부문에 경외 투자자의 명칭, 국가별, 피투자기업 및 이익배당기업의 명칭 및 소재지, 투자 회수 기간, 산업 분야와 금액 등 정보를 보고합니다.

#### 2) 피투자기업

- **투자 시:** 피투자기업은 경외 투자자를 지원하여 상무 주관부문에 관련 정보를 보고합니다. 피투자기업의 소재지 상무 주관부문은 대조 및 확인한 후 **성급 상무 주관부문에 제출하고, 성급 상무 주관부문이 동급 재정, 세무 등 유관부문과 함께** 조건 부합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피투자기업에 전국 유일 코드를 가진 《이익 재투자 상황표》 등 자료를 발급하며, 피투자기업이 관련 자료를 **경외 투자자에게 제출**합니다.

### 3) 이익배당기업

- **투자 시:** 경외 투자자가 세수관리규정에 따라 제공한 정책 조건 부합 자료를 수취한 후, 이익배당기업은 재투자분 이익에 대해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소득 지급 시:** 이익배당기업은 경외 투자자에게 배당, 이자, 특허권사용료 등 소득을 지불할 시, 세무기관에 경외 투자자가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를 신고 및 공제합니다.

2 호 공고에서는 이익배당기업의 원천징수 이연 및 공제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이익배당기업과 피투자기업이 경외 투자자가 제공한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 상기 3 자 각각의 책임과 의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후속 추가 징수관리규정에서 이를 명확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六、정책 시행 기간 및 소급 적용 가능 여부

경내 재투자 세액공제 정책은 2025 년 1 월 1 일부터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됩니다. 여기서:

- 경외 투자자는 2025 년 1 월 1 일부터 공고 발표 전(즉 2025 년 6 월 27 일)까지 발생한 적격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 정책 추가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공제액은 공고 발표(즉 2025 년 6 월 27 일) 후 발생한 적격 소득세액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8 년 12 월 31 일 정책 시행 만료일 이후 공제액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잔액이 소진될 때까지 공제를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외 투자자의 재투자일은 투자가 문건 시행 기간 중 “발생”한 것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득이 공제 가능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재투자자 투자협약 체결일, 상무부문 정보 보고일, 공상등기일, 《이익 재투자 상황표》 발급일 등 여러 시점과 관련되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날짜를 참고해야 할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외 투자자는 재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신정책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후속 추가 징수관리규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핵심 요약

재투자 세액공제 정책은 중국의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지속 확대 및 외상투자 장려에 대한 중요한 조치로서, 중국에서 외상투자를 장려하고 있다는 적극적인 신호이며, 경외 투자자들의 중국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하고 중국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 안정적으로 중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외 투자자에 대해서 호재가 될 것입니다.

2 호 공고는 재투자 과세이연 정책의 기초하에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제공했는데, 한편으로는 경외 투자자의 장기 투자 시 세부담을 줄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투자에 대해서 보다 높은 요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외 투자자는 신정책을 적용할 때 혜택 적용 조건(예: 투자 영역, 투자 기한), 신청 절차 및 관련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신 《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은 의견 수렴 중이며, 얼마 지나지 않아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의 관련 산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경외 투자자는 자체 평가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세수우대혜택의 업그레이드에는 보다 엄격한 후속 감독관리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경외 투자자는 사전에 자체 평가 및 검토를 해야 하고, 혜택 적용 후에도 재투자 프로젝트의 회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투자 회수 발생 시,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제액을 조정하거나 세금을 보충 납부하여 연체료 부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경내 재투자 세액공제는 Pillar 2 하에서 중국 구성원 실체의 유효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illar 2 가 전세계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다국적 기업그룹은 이 정책이 Pillar 2 세액의 보충 납부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추가적으로 평가 및 추정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 주석

---

1. 《경외 투자자의 이익배당금 직접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책에 관한 공고》,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507/content\\_7030227.htm](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507/content_7030227.htm) 참조
2. 《경외 투자자의 이익배당금 직접투자에 대한 원천소득세 잠정 비과세 정책의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8-12/31/content\\_5441290.htm](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8-12/31/content_5441290.htm) 참조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21) 2323-3350,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지영 **Director** (86) (10) 8553-1114, jiyoung.j.yu@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1) 2323-8174, [younggi.y.choi@cn.pwc.com](mailto:younggi.y.choi@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mailto:chris.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mailto: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뉴스플래시(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 全维度中国税务资讯平台“税界”3.0全新上线

不止于随身知识导航，更是你的专属税务智囊



苹果手机下载  
(iOS 10以上)



安卓手机下载  
(Android 6.0以上)



- 安卓手机也可以在腾讯应用宝中搜索“税界”进行下载
- “税界”网页版链接：<https://shuijie.pwcconsultantssz.com>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的资料于 2025 年 7 月 9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mailto: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 [www.pwccn.com](http://www.pwccn.com)

© 2025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